

〈일반논문〉

17세기 求貿의 교역량 변화와 그 의미*

이 승 민 **

〈목차〉

- I. 머리말
- II. 공·사무역과 구무의 교역량 비교
- III. 공무역과 구무
- IV. 사무역과 구무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후기 전체 무역에서 구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공무역과 사무역, 그리고 구무를 통해 공통적으로 거래되고 있던 물품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구무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다. 구무는 일본 막부로부터 대조선외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쓰시마가 필요한 물품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면, 조선조정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허가해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말한다. 이러한 구무는 교역시기나 물품의 종류·수량이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았다. 또한 처리 및 결제방식이 다양하고 공·사무역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외교와 무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 조일 양국 경제교류의 특별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조선후기 求貿의 전개과정과 성격』,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중 제3장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구무와 공·사무역을 통해 공통적으로 거래되고 있던 물품들을 비교해보면 사실 구무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다고 해서 구무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공무역과 사무역이 성행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별도의 교역인 구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사무역에서는 취급되지 않는 물품들이 구무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무는 외교와 무역 관계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던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 이루어진 특수한 형태의 교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구무, 조일무역, 조선, 쓰시마, 공무역, 사무역, 물품교류

I. 머리말

조선후기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막부로부터 對조선외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쓰시마를 통한 對막부정책이라는 간접통교체제로 이루어졌다. 양국 사이에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교역 중에는 ‘求質’라는 것이 있었다. 구무는 쓰시마 측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요청을 받아들인 조선 조정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말한다.¹⁾ 구무는 의례적인 求講과는 의미나 형태가 달라서 교역 시기나 물품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쓰시마 내외의 필요에 따라 수 백여

1) 『春官志』 권3, 求講. 구무의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민의 논문(『조선 후기 對馬島 求質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2010) 참고.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져 경제적인 성격이 강했다. 일본 내에서는 잘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나, 막부에 진상하기 위해서 혹은 쇼군이나 집정 등 막부 유력층의 의뢰를 받은 특정 물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시마가 조선 측에 교역을 요청하면, 조선에서 사안에 따라 이를 허가해서 유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무였다.

구무로 거래되는 물품 중에는 공·사무역을 통해서 취급되는 것들도 있었고, 해당 물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인이 없어서 구무를 통해서만 교역되는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쓰시마로부터 교역 요청이 들어오면 조선에서는 국가 기관이 개입하거나 왜관이 위치한 경상도 등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마련하게 하거나,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역으로 이를 처리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또한 구무품에 대한 결제는 대일 공무역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공목이나 공작미 등에서 計減하거나 은화 결제의 방식 등 별도로 값을 치르게 했기 때문에, 구무는 그 처리유형과 결제방식 등의 측면에서 공·사무역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구무에 관해서는 구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료인 『倭人求請臚錄』이 영인·국역된 이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구청과 구무의 개념을 구분·정립한 연구,²⁾ 매·말·서적·피물·약재·도자·황모필 등 특정 구무품을 분석한 연구³⁾, 실제로 구무가 어떻게 시행되고 운영되었는

2)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質의 개념과 실태」, 2010.

3) 김경미, 「17~8세기 대일외교·교역과 매」, 『역사와 세계』 34, 2008; 「17~18세기 일본의 朝鮮 藥材 求請」, 『대구사학』 119, 2015;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와의 말 [馬] 교역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7, 2012; 「조선후기 일본과의 매[鷹] 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조선후기 대일 도자교역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조선산 黃毛筆의 생산과 일본과의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이유리, 「『倭人求請臚錄』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37, 2011; 하여주, 「조선후기 대일관계 속의 皮物」,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지를 밝힌 연구⁴⁾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조일무역 관련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주제의 외연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무가 실제로 공·사무역과 어떤 연관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거래되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전체 무역에서 구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공무역과 사무역, 그리고 구무를 통해 공통적으로 거래되고 있던 물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공·사무역 교역량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제로 구무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조선후기 조일무역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구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조선후기 구무의 성격을 밝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I. 공·사무역과 구무의 교역량 비교

구무는 조선후기 쓰시마와의 일원적인 외교·교역관계가 성립하면서 정착된 무역방식의 하나이다. 조선전기에도 쓰시마의 요청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진 사례를 일부 찾아볼 수 있는데, 大藏經 요청이 대표적이다. 조선에서는 고려 말부터 창궐한 왜구를 금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고 그 일환으로 일본에서 대장경을 비롯한 물품 교역을 요청하면 이를 허락하기도 했다.⁵⁾ 하지만 그 종류나 양은 조선후기만큼 다양하거나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교역방식이 구무였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조

4) 이승민, 「조선후기 求貿의 시행과 운영절차」, 『한국학논총』 55, 2021.

5) 조선전기 일본의 대장경 요청에 관한 내용은 한문종의 논문(「朝鮮前期 日本의 大藏經 求請과 韓日間の 文化交流」, 『한일관계사연구』 17, 2002) 참고.

선전기에는 무로마치(室町) 막부의 쇼군을 비롯해 쓰시마 외에 다른 지방 호족들도 조선에 사절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쓰시마와의 단일교역관계가 성립된 조선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실록 외에는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서 당시의 상황과 교역규모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구무는 조선후기 쓰시마와의 일원적 외교·교역관계가 성립하면서 정착된 무역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쓰시마의 구무요청은 한동안 사례가 없다가 1630년대 중반부터 다시 등장한다. 그것은 왜란 이후 대일외교 및 무역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아직 구무라는 무역형태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기록물이 소실되어 관련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만약 사례가 있었다고 해도 그 실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한 조선이 전란을 겪으면서 쓰시마의 구무요청에 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요청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후 1630년대 중반부터 구무가 정착된 것은 1637년 겸대제의 실시로 대일무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일본 입장에서 보면 막부에 의한 쇄국정책 실시, 朱印船貿易 정지로 인한 동남아무역 단절, 淸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 일본인의 해외도항이 금지되었고, 通信之國인 조선 외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품들을 교역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쓰시마에서는 연례송사 외에도 差倭라는 명목으로 필요할 때마다 사자를 파견했다. 차왜는 쓰시마가 연례송사 외에 조선에 파견한 임시 사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임무는 매우 다양했고,⁶⁾ 각기 본연의 임무 외에 쓰시마번주의 명을 받아 조선에 특별히 물품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연례송사 正官·副官·封進押物 등이 본래 맡은 임무

6) 차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增正交隣志』 권2, 差倭; 홍성덕, 「17세기 朝·日 外交 使行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참고.

외에도 구무를 통해 별도로 물품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일 경우에는 사무역으로 처리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물품을 찾아 왜관에 들여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쓰시마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즉 교역 처리방식에서 공무역과 사무역의 형태가 동시에 드러나고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기도 하는 등 그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짓기 힘들다. 다시 말해 외교와 무역이 혼재되어 있는 조일무역의 상황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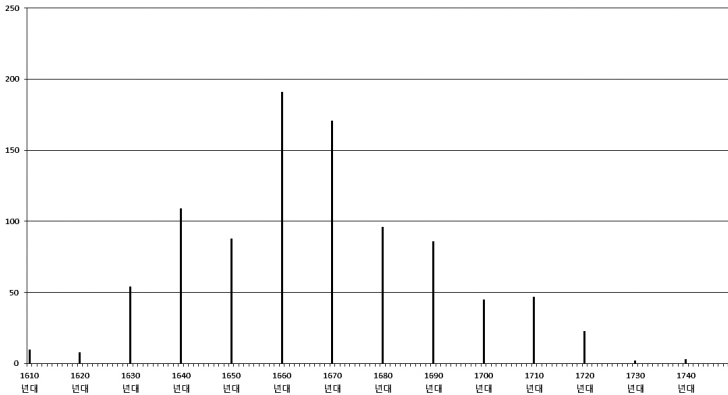
구무가 조선후기 전체 무역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무역 및 사무역과의 교역량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역과 사무역, 그리고 구무를 통해 공통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던 대표적인 물품은 인삼이었다. 그런데 이 무역 방식들을 통해 매우 많은 종류의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었지만, 공통되는 물품 각각의 거래량을 비교해보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는 특히 사무역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1684년 이후의 기록이어서 그 이전 시기 사무역량을 함께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禁制品을 제외한 수많은 물품들이 사무역을 통해 거래되고 있었다고는 해도 현존하는 대표적인 사무역 장부에 이러한 물품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구무 요청이 쇠퇴하는 시기는 172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그런데 『倭人求請謄錄』에 기록된 年月을 보면, 17세기까지는 매년·매월의 기록이 빈번하고 자세한 데 비해 18세기 이후에는 빠진 해가 많고 구무 요청의 빈도도 이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무역 지급품은 총 55개였는데, 그 중 12개만이 전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만 등장하고 있다.⁷⁾ 또한 구무와 비

7) 정성일, 「朝·日間 公貿易」, 『史學研究』 58·59, 1999, 833쪽.

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무역 지급량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
반 상황을 감안해서 공무역 지급량의 경우 기존 연구 성과의 결과물을 수
용해서 구무 거래량의 비교를 17세기에 한정해서 비교하고자 한다.⁸⁾

[그림 1] 연대별 쓰시마의 구무요청 건수



※ 『倭人求請臚錄』 1~8冊.

[표 1] 공·사무역과 구무의 인삼 교역량 비교(1684~1699)

연도	교역방식	구무량	공무역량	사무역량
1684	-	-	12.9	1,297
1685	-	-	12.9	959
1686	-	-	12.9	3,265
1687	-	-	12.9	710
1688	-	-	12.9	1,033
1689	-	-	12.9	731

8) 공무역 지급량의 경우 연례송사 지급량과 불시송사 지급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연례송사에게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690	-	12.9	696
1691	-	12.9	3,639
1692	-	12.9	2,276
1693	-	12.9	3,351
1694	50	12.9	6,678
1695	-	12.9	29
1696	-	12.9	411
1697	-	12.9	1,398
1698	-	12.9	2,478
1699	-	12.9	382
합계	50(50)	206	21,338

※ [표 2]에서 1684~1699년의 수치를 가져온 것이다.

※ 구무량은 실제 지급량이며, ()안의 수치는 요청한 양이다.

※ 공무역량은 전체 합산량에 대한 1년 단위 평균값이다.

1684~1699년이라는 시기는 약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조일 관계의 안정기로 사무역이 가장 성행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해당 시기에 인삼이라는 공통 물품의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공무역 대략 206근, 사무역 21,338근, 구무 50근으로 각각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특히 구무의 거래량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1694년에 구무로 거래된 인삼은 極上品으로, 막부에서 쇼군이 직접 명령을 내려 쓰시마에서 교역을 요청해온 것이었다.⁹⁾ 그러나 1694년을 제외하고 다른 해에는 인삼의 구무 요청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비해 공무역과 사무역으로는 매해 꾸준히 인삼이 거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삼은 통신사 및 문위행의 예단품으로 지급되는 예단삼

9) 『倭人求請臚錄』 7冊, 肅宗 20년(1694) 7월 22일.

외에 연례송사에게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사무역의 경우에는 조선 내 인삼 조달 상황에 따라 매해 인삼교역량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 내에서 인삼의 수요는 매우 높았는데,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구무의 경우 많은 양의 인삼을 한꺼번에 교역하기란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쓰시마에서는 많은 양의 인삼을 안정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무역의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 인삼이라는 공통물품으로 한정해서 보았을 때 구무와 공·사무역 사이에 거래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구무의 거래량이 공무역이나 사무역량에 비해 낮다고 해서 구무의 성격이나 특징을 평가절하하기는 힘들다. 사절에 의해 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상인에 의해 사무역이 성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별도의 교역형태인 구무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래 [표 2]에 나와 있는 인삼 이외의 나머지 품목은 사무역 장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공무역 외에는 구무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표 2]를 통해 보면 구무의 경우 요청량이나 실제 지급량이 일치하지 않고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무역이 사무역이나 구무에 비해 중시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구무량은 오로지 구무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수치를 나타내는 데 비해, 공무역량은 10년 동안 사절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던 모든 수치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 비교는 사실상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무역을 통해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쓰시마 측의 별도 요청으로 인해 해당 물품들이 추가로 교역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쓰시마에서 보다 上品의 물품들을 확보하거나 혹은 다른 무역 방식으로는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무라는 방법을 이용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무를 통해 건너간 물품들은 대부분 쓰시마

를 통해 막부 측으로 유입되거나 쓰시마번주가 막부 측 접대나 진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1690년대에 구무 요청이 들어왔던 인삼·백저포·흑마포·화석·황모필·진묵은 모두 쓰시마번주가 에도에 갈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에도로부터 의뢰를 받아 교역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외교와 무역 관계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서 이루어진 제3의 무역형태이자 동시에 특수한 형태의 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무는 기본적으로 쓰시마의 요청과 교류라고 하는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구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외교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II. 공무역과 구무

이미 언급했듯이 구무품 중에서는 구무를 통해서만 거래되는 것도 있었지만, 일반 공·사무역을 통해서 거래되는 물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물품들의 공무역과 구무, 사무역과 구무 거래량의 각각의 비교를 통해 조선후기 조일무역 안에서 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의 [표 2]는 17세기(1640~1699) 연례송사에게 지급되던 물품과 구무로 거래되던 물품, 즉 공무역 지급품과 구무 공통물품에 대해 10년 단위로 나누어 구무품의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쓰시마가 몇 건의 구무요청을 하고 조선에서 이에 대해 몇 건의 요청을 받아들여 실제로 지급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공무역품 지급량과 구무품 거래량 비교(1640~1699)

연대 물품	공무역	1640 ~1649	1650 ~1659	1660 ~1669	1670 ~1679	1680 ~1689	1690 ~1699	합계
	구무							
人 蔘 (觔)	공무역 지급량	129	129	129	129	129	129	774
	공무역액 (단가: 406匁)						314,244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50 (100)	320 (420)	197 (402)	100 (433)	0 (50)	50 (50)	717 (1,455)
		3-3	5-5	9-8	4-2	1-0	1-1	23-19
	구무액						291,102	
虎 皮 (張) ¹⁰⁾	공무역 지급량	93	93	93	93	93	93	560
	공무역액 (단가: 8,000匁)						4,480,000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0 (0)	10 (10)	40 (105)	0 (0)	30 (40)	0 (0)	80 (155)
		0-0	1-1	4-2	0-0	3-3	0-0	8-6
	구무액						640,000	
豹 皮 (張)	공무역 지급량	120	120	120	120	120	120	721
	공무역액 (단가: 1,600匁)						1,153,600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0 (0)	10 (10)	65 (160)	0 (0)	45 (70)	0 (0)	75 (240)
		0-0	1-1	5-2	0-0	4-4	0-0	6-7
	구무액						192,000	

10) 虎皮·豹皮를 세는 단위는 張이며 『倭人求請臚錄』에서는 대부분 張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끔씩 슈이 쓰인 경우도 있다(羊皮처럼 다른 동물의 가죽을 셀 때도 슈이 쓰인 곳이 있음). 슈은 領의 誤記인 것으로 보이는데, 張과 슈이 한 단위인지 혹은 가죽의 크기 등에 따라 張과 슈을 달리 사용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위의 표에서는 張과 슈을 한 단위로 생각해 합산했음을 밝혀둔다.

白 苧 布 (匹)	공무역 지급량	359	359	359	359	359	359	2,153	
	공무역액 (단가: 40匁)					86,210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40 (40)	120 (150)	413 (613)	405 (500)	160 (260)	100 (110)	1,238 (1,673)	
		1-1	4-3	19-17	14-13	8-6	6-6	52-46	
	구무역					49,520			
白 綿 紬 (匹)	공무역 지급량	231	231	231	231	231	231	1,388	
	공무역액 (단가: 19匁)					26,372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0 (0)	230 (230)	0 (0)	0 (0)	0 (0)	0 (0)	230 (230)	
		0-0	2-2	0-0	0-0	0-0	0-0	2-2	
	구무역					4,370			
白 木 綿 (匹)	공무역 지급량	464	464	464	464	464	464	2,782	
	공무역액 (단가: 11匁)					30,602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3 (3)	0 (0)	0 (0)	0 (0)	0 (0)	0 (0)	3 (3)	
		1-1	0-0	0-0	0-0	0-0	0-0	1-1	
	구무역					33			
黑 麻 布 (匹)	공무역 지급량	226	226	226	226	226	226	1,355	
	공무역액 (단가: 20匁)					27,100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0 (0)	0 (0)	20 (20)	10 (10)	0 (0)	15 (15)	45 (45)	
		0-0	0-0	1-1	1-1	0-0	1-1	3-3	
	구무역					900			

鷹子 (連)	공무역 지급량	166	166	166	166	166	166	993	
	공무역액 (단가: 1,100匁)					1,092,300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20~21 (20~21)	50 (50)	0 (3)	13 (15)	0 (0)	0 (0)	83~84 (88~89)	
		6-6	1-1	1-0	3-3	0-0	0-0	11-10	
	구무역					91,300~92,400			
花席 (張)	공무역 지급량	411	411	411	411	411	411	2,466	
	공무역액 (단가: 18匁)					44,388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0 (0)	0 (30)	0 (0)	0 (0)	0 (0)	50 (50)	50 (80)	
		0-0	1-0	0-0	0-0	0-0	1-1	2-1	
	구무역					900			
四張付 油菴 (部) ¹¹⁾	공무역 지급량	115	115	115	115	115	115	689	
	공무역액 (단가: 50匁)					34,450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16 (16)	5 (5)	40 (40)	0 (0)	0 (0)	0 (0)	61 (61)	
		3-3	1-1	1-1	0-0	0-0	0-0	5-5	
	구무역					3,050			
黃毛筆 (柄)	공무역 지급량	1,303	1,303	1,303	1,303	1,303	1,303	7,820	
	공무역액 (단가: 11匁)					86,020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500 (550)	350 (400)	1,425 (1,725)	1,550 (3,200)	550 (650)	1,150 (1,250)	5,525 (7,775)	
		4-4	3-3	8-7	9-8	5-5	4-4	24-31	
	구무역								

11) 油菴은 방수용으로 쓰이는 두꺼운 油紙를 가리키는데(한우근 외, 『譯註 經國大典-譯註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18쪽), 사장부유들은 油紙 4장을 붙여서 만든 것이다. 위의 합산량은 一張·四張·六張을 포함한 수치이다.

	구무역					60,775		
眞墨 (忽)	공무역 지급량	1,302	1,302	1,302	1,302	1,302	1,302	7,813
	공무역액 (단가: 1忽)					86,020		
	구무지급량 (구무요청량)	70 (70)	12 (120)	270 (760)	1,540 (2,495)	140 (150)	420 (420)	2,452 (4,015)
		1-1	2-2	9-6	14-13	3-3	2-2	26-27
	구무역					2,452		

- ※ 공무역 지급량은 정성일 논문(『朝·日間 公貿易』, 『史學研究』 58·59, 1999)에서재인용. 구무량은 『倭人求請臚錄』 1~7冊 및 『邊例集要』 권12, 『求質』.
- ※ 연대별 공무역 지급량의 수치는 전체 합산량을 10년 단위별로 단순나눗셈한 수치이다(소수점 아래 반올림).¹²⁾ 따라서 공무역 지급량의 10년 단위별 각각의 수량과 전체 합산량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 ※ 구무역은 공무역품 단가에 준해서 결과를 산출한 것이다.¹³⁾
- ※ 米 1石≒銀 5兩=銀 50忽; 木棉 1疋≒銀 11忽
- ※ () 안의 수치는 쓰시마 구무 요청량을 나타낸 것이며, () 위의 수치는 쓰시마 구무요청에 대해 조선에서 실제로 지급한 양이다.
- ※ 'O-O'은 쓰시마에서 구무를 요청한 건수에 대해 조선이 실제로 지급한 건수를 나타낸다.

위 [표 2]에 따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공무역 지급량이 쓰시마 구무요

12) 물론 각 연도별로 각 물품의 지급량에 차이가 있고, 공무역 지급량의 분석 사료가 되는 별폭 중에는 기록이 없는 해도 있다. 구무 역시 그때그때 쓰시마의 필요에 따라 요청이 들어오면 비로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다. 여기에서는 공무역 지급량과 구무 지급량의 10년 단위별 양적 비교를 위해 공무역 지급량의 수치는 전체 지급량을 10년 단위별로 단순나눗셈한 수치로 대체하고자 한다(1년 단위 각 연도별 공무역 지급량과 구무 지급량의 정확한 양적 비교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13) 구무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의 경우 앞서 해당 물품의 가격만큼을 公木이나 公作米 등에서 計減해서 지급하는 방법과 별도의 銀貨 등으로 받는 방법이 있었다. 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었던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공무역액과의 비교를 위해서 은화 가격으로 환산해서 구무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한다.

청에 의해 실제로 지급된 양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백목면·흑마포·매·화석·사장부유둔의 경우에는 공무역 지급량에 비해 구무 지급량이 극히 미미하다. 반면 인삼·백저포·황모필·진묵과 같은 몇 가지 품목의 경우에는 구무 요청량이 공무역 지급량에 육박하거나 혹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물품에 따라 거래된 연대별로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삼·백저포·황모필·진묵의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빠짐없이 구무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백목면·흑마포·화석·사장부유둔 같은 경우에는 연대에 따라 구무요청 자체가 아예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1~2건 정도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무역 지급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와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구무 지급량이 공무역 지급량에 준하거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보이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들은, 역시 10년 단위 거래량에 있어서도 수량의 차이와 함께 연대별 거래량의 편차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약재류 중에서 공무역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대표적인 물품은 인삼이었다. 쓰시마가 구무 요청한 인삼의 양은 총 1,455근으로 공무역 지급량인 774근보다 많았는데, 이에 대해 조선에서 실제로 지급한 양은 717근으로 공무역 지급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¹⁴⁾ 구무의 방식으로 인삼이 꽤 많이 요청되고 실제로도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인삼이 高價이긴 하지만 일본에서의 수요가 매우 높아서 공·사무역 뿐 아니라 구무를 통해서도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

14) 『倭人求請臚錄』1冊의 仁祖 18년 5월 30일과 仁祖 23년 6월 9일의 경우 인삼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仁祖 23년 6월 9일의 경우는 가져온 副使가 특별히 요청한 것인데, 이것은 가져온 예단 중에서 제하고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인삼 이외의 약재는 연례송사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 사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인삼은 쓰시마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쓰시마번주가 참근교대 때 막부에 가져가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막부 유력층의 별도 요청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적인 사례로 1658년 3월 29일에 쓰시마는 한번에 100근의 인삼을 요청해왔는데, 이는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5월 초열흘에 막부 執政의 딸과 혼례를 치르게 되어 그때 혼수로 쓰일 용도로 각종 잡물과 함께 요청해왔던 것이다.¹⁵⁾ 소 요시자네는 당시 쓰시마번주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사안을 참작해 교역을 허가했다. 이러한 경우처럼 쓰시마의 주요한 필요에 따라 구무 요청량이나 실제 지급량이 다른 연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1680년대에는 인삼의 구무 지급량이 없는데, 이 기사는 『倭人求請臚錄』에는 기록이 없고 『邊例集要』에만 나온다. 1687년 2월 쓰시마번주가 매해 에도에 바치는 인삼 50근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하고 있으므로 약간의 거래라도 허락해달라고 했으나, 조선 측에서는 엄히 방색하라 했을 뿐 왜 거래를 허가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¹⁶⁾

피물류 중에서는 호피와 표피 구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공무역 지급량에 비해 구무 요청량이나 실제 지급량은 그리 많지 않다. 호피와 표피는 통신사·문위행의 예단품으로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연례송사에게 지급되는 회사·구청품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요청건수 역시 각각 8건과 10건 정도이다. 1660년대와 1680년대에 구무량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호피와 표피는 이 역시 막부 쇼군과 집정의 의뢰에 따라 쓰시

15) 『倭人求請臚錄』 2冊, 孝宗 9年(1658) 3월 29日.

16) 『邊例集要』 권12, 求貿, 丁卯 2月.

마번주가 직접 요청해온 것으로, 이러한 귀한 물품을 쓰시마번주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매의 구무량은 공무역 지급량과 비교하면 1/10 정도로 그 수가 적다. 그것은 통신사와 문위행이 일본에 갈 때마다 예단으로 매를 가져갔을 뿐 아니라 회사·구청을 통해서도 매년 꽤 많은 양이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부 내의 매사냥 수요에 따라 쓰시마에서는 구무를 통해 매를 교역하고자 했었다. 그런데 매는 1640~70년대까지 꾸준히 구무 요청이 들어오다가 1680~90년대에는 요청 자체가 없었다. 이것은 일본 내의 정치적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5대 쇼군 츠나요시(徳川綱吉)에 의한 살생금지령이 반포되면서 매사냥이 금지되었고 그에 따라 사행 예단 품 뿐 아니라 회사·구청에 의한 매 지급도 중지되었던 것이다.¹⁷⁾ 구무에 의한 매 교역 역시 함께 중단되었다.

위의 [표 2]를 보면 여러 물품들 중 쓰시마에서 가장 빈번히 요청해온 것은 백저포이다. 같은 면포류에 해당하는 백면주·백목면·흑마포에 비해 요청건수나 실제 지급건수 및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백저포가 다른 면포류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백저포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면포류는 쓰시마에서 구무를 요청한 건수와 조선에서 실제로 지급한 양이 일치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백저포에 비해 양이 적었기 때문이다.¹⁸⁾

17) 1683년(숙종 9)부터 츠나요시 쇼군에 의한 살생금지령 반포 및 쓰시마 내의 경제적 사정과 관련해서 쓰시마에서는 회사·구청용 매 전량을 쌀과 목면으로 대신 가져가기 시작했다. 이미 송사가 폐지된 평언사송사분 매 2마리를 제외한 총 58마리분의 대체물품 환산비율은 매 29마리는 1마리당 쌀 5섬, 나머지 29마리는 1리당 목면 30필로 약정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대체물품으로 지급되던 매는 1717년(숙종 43) 이후 다시 현물 매로 지급되기 시작했다(이승민, 『조선후기 일본과의 매[鷹] 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180~182쪽).

화석은 1650년대 1690년대를 제외하면 쓰시마에서 요청한 사례가 없다. 1658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소 요시자네의 혼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¹⁹⁾ 1692년에는 소 요시자네에서 소 요시즈구(宗義倫)로 쓰시마번주가 교체되면서 慶事에 사용하기 위해 요청해온 것이었다.²⁰⁾ 후자의 경우에는 布帛尺으로 길이 4자 1치, 너비 2자로 만들어진 화석을 특별히 요청해 오기도 했다.

유둔은 방수용으로 사용되는 두꺼운 기름종이를 말하는데, 사장부유 둔은 유둔 4장을 붙여서 만든 것이다. 1장·4장·6장을 붙여서 만든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둔으로 합산했다. 6장을 붙여 만든 유둔과 36장을 붙여 만든 유둔도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 사신에 대한 예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²¹⁾ 쓰시마에서 유둔을 요청해온 이유나 일본 내에서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유둔의 용도, 즉 비가 올 때 쓰거나 혹은 일상생활 등에서 습기를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황모필이나 진묵과 같은 문방구류 역시 공무역 지급량에 준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황모필은 구무 요청량이 7,775필로 공무역 지급량인 7,820필에 육박하며, 구무 지급량도 5,525필로 공무역 지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倭人求請謄錄』에는 다양한 종류의 붓이 등장하는데, 붓자루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玳瑁筆·紅糖筆·烏竹筆·斑竹筆·龍鞭筆·畫龍筆 등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고, 황모필만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대모황모필·홍당죽·황모필·반죽황모필 등 붓자루의 이름이 상세하게

18) 백지포의 대일수출가격은 銀 4냥(40匁) 정도로 백면주·백목면·흑마포의 2배 정도였다고 한다(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35~37쪽).

19) 『倭人求請謄錄』 2冊, 孝宗 9년(1658) 3월 29일.

20) 『倭人求請謄錄』 6冊, 顯宗 18년(1692) 10월 7일.

21)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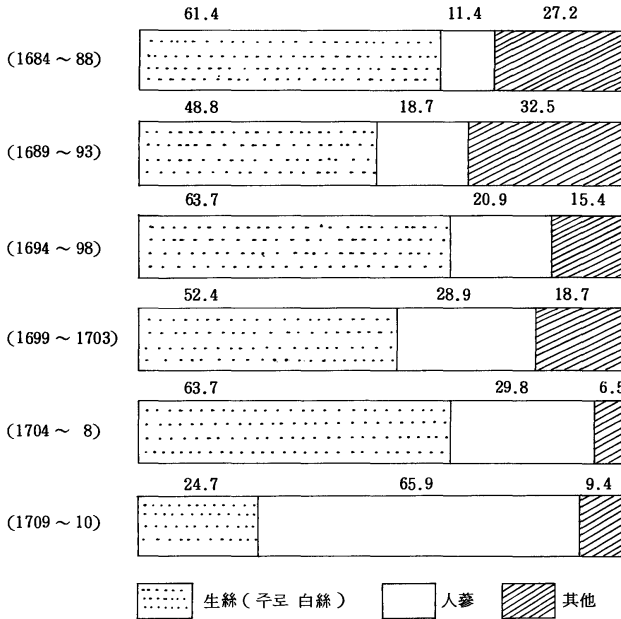
명기되어 있기도 하다. 위의 [표 2]에서 황모필 수량은 단순히 황모필로만 기록된 것과 ○○황모필 혹은 ○○황필 등으로 기록된 경우를 합산한 것이며, 붓자루의 명칭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황모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붓자루의 이름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 즉 대모필·홍당필·오죽필·반죽필·용편필·화룡필은 요청량이 4,350필이고 실제 지급량은 3,650필이었는데, 이 수량까지 합산하면 요청량 12,125필, 실제 지급량 9,175필이 되어 공무역 지급량보다 오히려 많아진다. 이러한 황모필 역시 주로 쓰시마번주가 에도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요청한 것이었다.

진목은 막부 측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구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쓰시마의 구무 요청량은 4,015홀, 조선의 실제 지급량은 2,452홀로, 각각 연례송사 거래량인 7,813홀의 절반,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쓰시마는 진목 이외에도 황해도 해주에서 생산되던 질 좋은 떡의 하나인 翰林風月이나 首陽玄精·琴墨·翠雲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의 표에서는 한림풍월 등의 수치는 제외한 것인데, 같은 시기 한림풍월 등이 요청·지급된 양까지 합친다면 진목 역시 공무역 지급량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IV. 사무역과 구무

조선후기 대일 사무역에서는 禁制品를 제외하면 큰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7세기 이후 사무역은 ‘조선산 人蔘과 일본산 銀의 직교역’과 ‘중국산 生糸(白糸)·絹織物과 일본산 銀의 증개무역’이라고 하는 2중구조로 전개되었다.²²⁾

[그림 2] 대일사무역 수출품의 구성 추이



※ 田代和生, 「貿易帳簿からみた私貿易の數量的考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267쪽.

※ 기타 물품에는 고급 견직물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던 물품 중 백사·견직물과 인삼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삼의 비중이 커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두 물품이 대일 사무역의 가장 주요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역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는 많지 않는데, 현재 쓰시마의 사무역액과 무역이윤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는 세 가지 정도가 소

22) 김동철, 「17~18세기 조일무역에서 '私貿易 斷絶論'과 '나가사키(長崎) 直交易論'에 대한 연구사 검토」, 『지역과 역사』 31, 부경역사연구소, 2012, 308쪽.

개되어 있다.²³⁾ 그 중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1684~1711년간 수출과 수입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貞享元甲子年より正徳元辛卯年迄)御商賣御利潤并御銀鐵物渡并御代物朝鮮より出高積立之覺書』(日本國立國會圖書館 소장)라는 문서로서, 1684년부터 1710년 8월까지 사무역 취급품목·수량·가격·무역액·이윤·외상판매(대금)·외상매입(대금) 등에 관해 연대별로 기록되어 있다.²⁴⁾ 이를 통해 대표적인 사무역품이었던 인삼과 견직물의 교역량을 사무역 장부에 기록된 시기의 구무 거래량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구무를 통해 거래된 물품 중에 생사(백사)는 없었고 견직물류의 교역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사에 관한 논의는 여기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우선 인삼의 교역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23) 쓰시마의 사무역액과 무역이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는 『朝鮮貿易利潤積帳. 原題: 貞享元甲子年より正徳元辛卯年迄二十八ケ年之間御元方勤役中出代物之分正徳二壬辰年より同五乙未年迄四ケ年之間京都賣直段並シを以朝鮮ニ而之買元銀并御元方役方入目等致指引殘ル御利潤并日本代物朝鮮ニ而賣出御利潤杯相加へ候積帳壹冊』(1716: 日本東京大學史料編纂所, 宗家史料 宗家 7-82. '동경대본'), 『御商賣御利潤等覺書. 原題: 貞享元甲子年より正徳元辛卯年迄御商賣御利潤并御銀鐵物渡并御代物朝鮮より出高積立之覺書』(1716: 日本國立國會圖書館, 宗家記録 823-31-40. '일본국회본'), 『朝鮮爲私貿易日本代物古來より差渡候處古キ下積帳無之元祿七年より同拾六年迄續ハ不仕候得共下積帳有之元祿之比迄日本代物日本ニ而買元直段下直ニ而朝鮮賣立直段宜相見候分年々差渡高并一品ニ限買元賣立差引利潤平均仕候分并近年日本代物差渡買元賣立之仕分積帳』(1756: 韓國國史編纂委員會, 對馬島宗家文書 記録類 No.3835. '국편본')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일본국회본'이 1684~1711년간의 수출과 수입 모두를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서 '동경대본'은 같은 기간의 조선산 물품 거래실적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국편본'은 조선산 물품의 경우 1694~95년과 1753~55년, 그리고 일본산 물품의 경우 1694~95년과 1698~99년, 1701~03년에 대해서만 기록이 있어서 연도별 장기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1, 178~181쪽).
- 24)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251쪽.

[표 3] 인삼의 사무역 거래량과 구무 거래량 비교(1684~1710)

연도	사무역 거래량	사무역액	구무 거래량	구무액
1684	1,297	300貫 643匆	-	-
1685	959	220貫 509匆	-	-
1686	3,265	856貫 52匆	-	-
1687	710	182貫 97匆	-	-
1688	1,033	295貫 863匆	-	-
1689	731	197貫 847匆	-	-
1690	696	231貫 753匆	-	-
1691	3,639	1,264貫 997匆	-	-
1692	2,276	776貫 204匆	-	-
1693	3,351	1,083貫 264匆	-	-
1694	6,678	2,146貫 790匆	50	20貫 300匆
1695	29	11貫 492匆	-	-
1696	411	124貫 313匆	-	-
1697	1,398	510貫 911匆	-	-
1698	2,478	1,033貫 999匆	-	-
1699	382	124貫 914匆	-	-
1700	1,443	657貫 41匆	-	-
1701	1,238	624貫 581匆	-	-
1702	1,074	552貫 568匆	-	-
1703	777	370貫 546匆	-	-
1704	1,725	957貫 570匆	-	-
1705	992	408貫 899匆	-	-
1706	794	412貫 247匆	-	-
1707	164	106貫 850匆	-	-
1708	896	577貫 756匆	-	-

1709	1,641	1,114貫 373匁	-	-
1710	1,180	514貫 77匁	-	-
합계	41,257근	14,658貫 156匁	50근	20貫 300匁

※ 사무역량은 田代和生の 저서(『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286~7 쪽)에서 재인용; 구무거래량은 『倭人求請謄錄』 1~8冊 및 『邊例集要』 권12, 求質.

※ 인삼 1근=銀 406匁(사무역 장부 上品 인삼 기준); 1貫=1,000匁.

당시 일본에서는 나가사키를 통해서도 만주산 인삼을 수입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품질이 매우 낮은 것이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병이 나면 반드시 인삼을 쓰는데, 인삼을 구하지 못하면 죽는다.”²⁵⁾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선인삼은 상대적으로 효능이 높고 우수해서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인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 이에 쓰시마에서는 일본 내에서 인삼 국산화에 성공한 1728년까지 조선인삼을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었다.

위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삼의 사무역 거래량과 구무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구무 거래량이 현격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1694년의 50근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기에는 인삼에 대한 구무 요청을 찾아볼 수 없다. 해당 시기 사무역으로 거래된 인삼의 총 합계가 41,257근이었던 것을 보면 당시 인삼의 교역은 거의 모두 사무역을 통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시기 인삼의 구무 거래량이 사무역 거래량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던 것은 통신사·문위행의 예단 품 뿐 아니라 위의 [표 2]와 같이 공무역 지급품 안에도 인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 2]에서는 공무역 지급량과 구무 거래량이 거의 비등하지만 이는 17세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표 3]의 인삼 구무량은 사무역 거래량과 비교하는 관계로 1684~1710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며,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8세기

25) 李瀾, 『星湖僊說』 권14, 「人事門」, 蔘商. “倭俗病必用參, 不得者死”

에 들어 인삼의 사무역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인삼과 함께 대표적인 사무역품이었던 견직물의 경우는 어떠한가.

[표 4] 견직물의 사무역 거래량과 구무 거래량 비교(1684~1710)

연도	사무역 거래량	구무 거래량 (구무 요청량)	구무요청 견직물의 종류
1684	13,937反 (6,968.5필)	-	
1685	16,579反 (8,289.5필)	-	
1686	44,986反 (22,493필)	0 (30)	宮綃
1687	61,592反 (30,796필)	0 (10)	大紗
1688	15,264反 (7,632필)	0 (95)	宮綃 大緞 大紗
1689	15,786反 (7,893필)	0 (■)	大緞 大紗
1690	65,498反 (32,749필)	0 (5)	中紗
1691	59,012反 (29,506필)	0 (186)	金線 大緞 大紗 宮綃
1692	56,339反 (28,169.5필)	0 (■)	大緞紅方紬 黑禾段
1693	27,641反 (13,820.5필)	-	
1694	5,983反 (2991.5필)	-	
1695	27,358反 (13,679필)	-	
1696	36,942反 (18,471필)	-	
1697	10,870反 (5,435필)	-	
1698	6,694反 (3,347필)	-	
1699	995反 (497.5필)	-	
1700	238反 (119필)	-	
1701	10,108反 (5,054필)	-	
1702	16,331反 (8,165.5필)	-	
1703	14,811反 (7,405.5필)	-	

1704	2,704反 (1,352필)	-	
1705	2,075反 (1,037.5필)	-	
1706	3,660反 (1,830필)	-	
1707	4,863反 (2,431.5필)	-	
1708	2,113反 (1,056.5필)	-	
1709	2,980反 (1,490필)	-	
1710	4,020反 (2,010필)	-	
합계	529,379反 (26,189.5필)	0 (326+ α)	

※ 구부거래량은 『倭人求請謄錄』 1~8冊 및 『邊例集要』 권12, 求貿; 사무역량은 田代和生の 저서(『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284쪽)에서 재인용.

※ 사무역 거래량은 모든 견직물의 종류를 합산한 것이다.

※ '■'은 구부 요청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 '卷物(두루마리, 필)=2反'을 가리킨다고 하니, '1反=0.5필'에 해당한다.

※ 견직물의 경우 종류, 길이나 크기 등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다. 사무역 교역량의 경우 모든 종류의 견직물을 합산한 것이어서 사무역액을 따로 적지는 않았다.

생사와 견직물은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 상인이 청으로부터 수입해 일본으로 재수출한 대표적인 사무역품이었다. 원래 일본에서 중국산 생사와 견직물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 이후 활발히 전개된 南蛮貿易, 즉 朱印船貿易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1636년부터 일본에서 소위 쇄국령을 시행하고 자국민의 해외도항을 금지하면서 주인선무역은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생사와 견직물의 수입 판로 또한 막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막부에서는 쓰시마를 통해 조선에서 이러한 물품을 구하고자 했다. 일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견직물의 종류는 다양했는데, 대개 막부에서 쓰시마번주에게 교역을 요구했던 것이다. 막부의 쇼군을 비롯한 집권층의 중국산 견직물의 수요는 꽤 높았는데 그것은 품질이 우수하고 품목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산 견직물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색깔의 유행이나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오히려 중국산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²⁶⁾ 즉 쓰시마가 조선에 꾸준히 견직물 교역을 요청한 것은 바로 이러한 특수한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무역 외에 구무를 통해 거래된 물품 중에 생사(백사)는 없었고 견직물류의 교역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견직물의 사무역량과 구무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위의 [표 4]와 같은데, 1684~1710년 기간 동안 사무역을 통해서는 다양한 견직물이 매년 일본으로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하지만 같은 시기 쓰시마의 견직물 구무요청은 총 8차례에 불과하며, 모두 쓰시마번주가 막부 집정의 의뢰를 받아 요청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구무를 통해서는 견직물의 교역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다.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쓰시마의 구무에 대해 難得之物인지 易得之物인지의 여부를 따져보았는데, 중국산[唐物]이었던 견직물에 대해서는 교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견직물은 이미 사무역에서 상인을 통해 충분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구하기 쉽지 않은 물품을 구무를 통해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다만 쓰시마가 1690년 9월에 요청했던 中紗 5필의 경우, 『倭人求請臚錄』에서는 조선정부에서 中紗가 唐物과 연관되어 무역을 허락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상인 등에게서 편의대로 무역해가라는 뜻을 전했다고 하고²⁸⁾ 『邊例集要』에서는 같은 이유로 방색했다고 해서²⁹⁾ 조선의 처리방식이 반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倭人求請臚錄』에서 中紗의 사무역 거래를 허락했다고는 하지만 이후의

26) 山脇梯二郎, 『長崎の唐人貿易』, 吉川弘文館, 1964, 231~235쪽(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285쪽에서 재인용).

27) [표 4]의 주요 견직물 사무역량은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던 紗綾·縮緬·紋無·綸子·紬·緞子·紗·襪의 거래량을 합산한 것이다.

28) 『倭人求請臚錄』 6冊, 1690년 9월 27일.

29) 『邊例集要』 권12, 求貿.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해당연도의 쓰시마 사무역 장부에도 견직물 중 紗의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구무의 교역량을 공·사무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전체 조일무역 안에서 구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구무와 공·사무역을 통해 공통적으로 거래되고 있던 물품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구무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다고 해서 구무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공무역과 사무역이 성행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별도의 교역인 구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사무역에서는 취급되지 않는 물품들이 구무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무는 외교와 무역 관계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던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 이루어진 특수한 형태의 교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무는 기본적으로 쓰시마 내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구무 품 중에는 공·사무역으로 거래되는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일정한 틀의 공·사무역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매우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었다. 구무는 외교와 교역 관계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던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 이루어진 제3의 무역형태이자 동시에 특수한 형태의 무역으로서 쓰시마의 요청이라는 절대적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따라서 쓰시마는 구무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동시에 구무를 통해 끊임없이 조선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쓰시마 측에 유리

하게 정치·외교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즉 구무는 기본적으로 쓰시마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경제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정치적·외교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2021.06.30. 투고 / 2021.07.23. 심사완료 / 2021.07.29. 게재확정)

[Abstract]

**The Changes in trade volume of Gumu trade
in the 17th century and its nature**

Lee, Seung-M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nature of the gumu trade by focusing on the public and private trade, and goods commonly traded through gumu trade in the late Joseon Dynasty.

Gumu indicates a form of trade in which Tsushima island of Japan, commissioned by the Japanese Bakufu to establish and maintain diplomatic relations and trades with Joseon, asked Joseon for specific goods when unexpected needs arose in the province. The gumu trade was conducted irregularly, and there was no mutually agreed norm as to the type and quantity of goods for trading. In addition, performed in various modes of operation, the gumu trade was connected to public and private trades. Thus it illustrates special aspects of economic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Japan in a time when diplomacy and trade were not separated.

Comparing gumu trade and goods that were commonly traded through public and private trade, in fact, the trade volume of gumu trade is relatively low.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value the meaning of gumu trade. Because even when public and private trades were prevalent, gumu trade, a separate trade, continued to take place, and goods not handled in public and private trade were only being traded

through gumu trad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gumu trade was a special form of trade between Joseon and Tsushima, which were very close in diplomatic and trade relations.

□ Keyword

Gumu trade, Joseon-Japan trade, Joseon, Tsushima, public trade, private trade, Commodity Exchange

[참고문헌]

1. 사료

『倭人求請膽錄』

『邊例集要』

『增正交隣志』

『春官志』

『星湖僿說』

『(貞享元甲子年より正徳元辛卯年迄)御商賣御利潤并御銀鐵物渡并御代物朝鮮より出高積立之覺書』

2. 저서 및 논문

김경미, 「17~8세기 대일외교·교역과 매」, 『역사와 세계』 34, 효원사학회, 2008.

김경미, 「17~18세기 日本의 朝鮮 藥材 求請」, 『대구사학』 119, 대구사학회, 2015.

김동철, 「17~18세기 조일무역에서 私貿易 斷絶論과 ‘나가사키(長崎) 直交易論’에 대한 연구사 검토」, 『지역과 역사』 31, 부경역사연구소, 2012.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質의 개념 및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와의 말[馬] 교역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이승민, 「조선후기 일본과의 매[鷹] 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이승민, 「조선후기 대일 도자교역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81, 조선시대사학회, 2017.

- 이승민, 「조선산 黃毛筆의 생산과 일본과의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 이승민, 「조선후기 求質의 시행과 운영절차」, 『한국학논총』 5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 이유리, 「『倭人求請謄錄』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37, 서지학회, 2011.
- 정경주, 「인조-숙종조의 왜인 구청 관행과 결제방식 조선후기 대일무역 사례 소개-」, 『무역평론』 창간호, 경성대학교 무역연구소, 1994.
- 정성일, 「朝·日間 公貿易」, 『史學研究』 58·59, 한국사학회, 1999.
-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 하여주, 「조선후기 대일관계 속의 皮物」,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 한우근 외, 『譯註 經國大典-譯註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홍성덕, 「17세기 朝·日 外交使行 연구」,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山脇悌二郎, 『長崎の唐人貿易』, 吉川弘文館, 1964.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